

문서번호 영동군의회 2019 - 27

시행일자 2019. 8. 26.

수 신 영동군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동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 붙 임 1.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발의자 명부 1부. 끝.

발의자 : 의원 이승주 (인) 외 7인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승주 의원 외 7
발의년월일	2019. 8. 26.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발의년월일 : 2019. 8. 26.

발 의 자 : 이승주,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김용래, 이대호, 남기학, 정은교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 불출석 · 증언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1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 41조

첨부 :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의회 중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u></p> <p><u>②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불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u>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u></p> <p style="margin-left: 2em;"><u>2. 해당 증인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u></p> <p><u>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u>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u></p>

위 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부 과 대 상	과태료 금 액
1.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가. 고의로 불응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못하게 한 경우 나. 고의는 아니지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을 준 경우	500만원 300만원
2. 선서 또는 증언 거부	가. 고의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못하게 한 경우 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을 준 경우 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가 늦어진 경우 라.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50만원 20만원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의자 명부

직 책	성 명	서명또는날인	비 고
의 원	이 승 주		
의 원	윤석진		
의 원	이 수 동		
의 원	정진규		
의 원	김용래		
의 원	이대호		
의 원	남기학		
의 원	정은교		